|  |  |  |
| --- | --- | --- |
| **<회계인원 관리방법> 인쇄배포에 관한 통지**재회[2018]33호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정국, 중공중앙직속기관 사무관리국, 국가기관 사무관리국 재무관리사, 중앙군위후방근무보장부 재무국회계인원 관리를 강화하고, 회계인원 범위와 전문능력 요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및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부(部)는 <회계인원 관리방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인쇄배포 하오니 준수하여 집행하시길 바랍니다.첨부: 회계인원 관리방법재정부2018년 12월 6일회계인원 관리방법제1조 회계인원 관리를 강화하고 회계인원의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및 관련 법률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제2조 회계인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조직(이하 ‘단위’) 중 회계 결산 및 회계 감독 실행 등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을 가리킨다.회계인원은 아래의 구체적인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한다.2.1 출납2.2 감사2.3 자산, 부채와 자본(순자산)의 결산2.4 수입, 비용(지출)의 결산2.5 재무성과(정부예산 집행결과)의 결산2.6 재무회계보고(결산보고) 작성2.7 회계감독2.8 회계기구 내 회계당안(번역자 주: 문서)관리2.9 기타 회계업무단위 회계기구 책임자(회계주관인원), 총회계사를 담당하는 인원은 회계인원에 속한다.제3조 회계인원이 회계업무에 종사하는데 있어서 아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3.1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과 국가의 통일적인 회계 제도 등 법률법규 준수3.2 양호한 직업 도덕성 구비3.3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 참가3.4 회계업무 종사에 필요한 전문능력 구비제4조 회계인원은 회계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고, 기본적으로 회계 기초지식과 업무 기능을 파악하여, 독립적으로 기본 회계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면 회계업무 종사에 필요한 전문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표명한다.단위는 국가 유관 법률법규와 본 방법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회계인원이 회계업무 종사에 필요한 전문능력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제5조 단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등 법률법규와 본 방법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회계업무의 수요를 결부시켜 자주적으로 회계인원을 임용(채용)하여야 한다.단위가 임용(채용)한 회계기구 책임자(회계 주관인원) 및 총회계사는 <중화인민공화국회계법>, <총회계사 조례> 등 법률법규와 본 방법 유관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단위는 임용(채용)된 회계인원 및 그 종업 행위에 대해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제6조 회계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 발생으로 인해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받은 인원은 단위가 그를 회계업무에 종사하도록 임용(채용)할 수 없다.<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유관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벌을 받아 5년 이내 회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인원은 처벌 기간 만료 전까지, 단위가 그를 회계업무에 종사하도록 임용(채용)을 할 수 없다. 본 조 제1관과 제2관에 규정된 위법 인원 업종진입 금지기한은 그 위법 행위가 인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제7조 단위는 유관 법률법규 및 내부통제제도의 요구와 회계업무의 필요하여 근거하여 회계 직책을 설치하고, 회계인원의 직책 권한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8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재정부문, 신강생산건설병단 재정국, 중앙군위후방근무보장부, 중공중앙직속기관 사무관리국, 국가기관 사무관리국은 임의로 조사대상 추출, 임의로 집법조사인원을 선출 파견하는 방식을 취해 법에 의거 단위가 임용(채용)한 회계인원 및 그 종사 현황에 대한 관리와 감독 조사를 진행하고, 또한 감독 조사 상황 및 결과를 적시에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법에 의거 구성된 회계인원의 자율적 조직은 유관 법률법규와 그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회원들이 법에 의거 회계업무에 종사하도록 지도 및 재촉하고, 유관 법률법규 및 회계 직업 도덕성과 그 정관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벌을 내린다.제10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정국, 중앙군위후방근무보장부, 중공중앙직속기관 사무관리국, 국가기관 사무관리국은 본 방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하고 재정부에 비안(번역자 주: 등록)할 수 있다. 제11조 본 방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关于印发《会计人员管理办法》的通知**财会〔2018〕33号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政局，中共中央直属机关事务管理局，国家机关事务管理局财务管理司，中央军委后勤保障部财务局：　　为加强会计人员管理，明确会计人员范围和专业能力要求，根据《中华人民共和国会计法》及相关法律法规的规定，我部制定了《会计人员管理办法》，现予印发，请遵照执行。　　附件：会计人员管理办法　　财政部　　2018年12月6日会计人员管理办法第一条 为加强会计人员管理，规范会计人员行为，根据《中华人民共和国会计法》及相关法律法规的规定，制定本办法。第二条 会计人员，是指根据《中华人民共和国会计法》的规定，在国家机关、社会团体、企业、事业单位和其他组织（以下统称单位）中从事会计核算、实行会计监督等会计工作的人员。会计人员包括从事下列具体会计工作的人员：（一）出纳；（二）稽核；（三）资产、负债和所有者权益（净资产）的核算；（四）收入、费用（支出）的核算；（五）财务成果（政府预算执行结果）的核算；（六）财务会计报告（决算报告）编制；（七）会计监督；（八）会计机构内会计档案管理；（九）其他会计工作。担任单位会计机构负责人（会计主管人员）、总会计师的人员，属于会计人员。第三条 会计人员从事会计工作，应当符合下列要求：（一）遵守《中华人民共和国会计法》和国家统一的会计制度等法律法规；（二）具备良好的职业道德；（三）按照国家有关规定参加继续教育；（四）具备从事会计工作所需要的专业能力。第四条 会计人员具有会计类专业知识，基本掌握会计基础知识和业务技能，能够独立处理基本会计业务，表明具备从事会计工作所需要的专业能力。单位应当根据国家有关法律法规和本办法有关规定，判断会计人员是否具备从事会计工作所需要的专业能力。第五条 单位应当根据《中华人民共和国会计法》等法律法规和本办法有关规定，结合会计工作需要，自主任用（聘用）会计人员。单位任用（聘用）的会计机构负责人（会计主管人员）、总会计师，应当符合《中华人民共和国会计法》《总会计师条例》等法律法规和本办法有关规定。单位应当对任用（聘用）的会计人员及其从业行为加强监督和管理。第六条 因发生与会计职务有关的违法行为被依法追究刑事责任的人员，单位不得任用（聘用）其从事会计工作。因违反《中华人民共和国会计法》有关规定受到行政处罚五年内不得从事会计工作的人员，处罚期届满前，单位不得任用（聘用）其从事会计工作。本条第一款和第二款规定的违法人员行业禁入期限，自其违法行为被认定之日起计算。第七条 单位应当根据有关法律法规、内部控制制度要求和会计业务需要设置会计岗位，明确会计人员职责权限。第八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财政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财政局、中央军委后勤保障部、中共中央直属机关事务管理局、国家机关事务管理局应当采用随机抽取检查对象、随机选派执法检查人员的方式，依法对单位任用（聘用）会计人员及其从业情况进行管理和监督检查，并将监督检查情况及结果及时向社会公开。第九条 依法成立的会计人员自律组织，应当依据有关法律法规和其章程规定，指导督促会员依法从事会计工作，对违反有关法律法规、会计职业道德和其章程的会员进行惩戒。第十条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政局，中央军委后勤保障部、中共中央直属机关事务管理局、国家机关事务管理局可以根据本办法制定具体实施办法，报财政部备案。第十一条 本办法自2019年1月1日起施行。　　　 　　 |